

2017년도 하반기 광주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하반기 광주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채용방법	채용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 과목	시험시간
			계	남	여		
계			44	41	3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소 방	8	8	-	필수(3) 국어, 한국어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5과목 (100분)
경력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구 조	15	15	-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3과목 (60분)
		구 급	15	12	3		
		운 전	5	5	-		
		전 산	1	1	-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수과목 중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로 함

○ 선택과목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 내용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별표 1>과 같음 → [붙임 1]
소방관계법규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 학	수학 I, 수학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2 응 시 자 격

가. 응시 자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함)

- 1) **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정한 자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p>※ 「지방공무원법」 제31조(자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3.7)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자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p>※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p> <p>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면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p>

- 2) **경력경쟁채용**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다만, 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은 응시 가능

나. 거주지 제한

구 분	응 시 요 건
공 개 경 쟁 채 용	<p>▶ 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p> <p>①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p> <p>②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p>
경 력 경 쟁 채 용	거주지 제한 없음

※ 거주지 요건 제한 확인기준

-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사·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응시연령(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채용구분	응시연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18세 이상 ~ 40세 이하	1976. 1. 1. ~ 1999. 12. 31.
경력경쟁채용	20세 이상 ~ 40세 이하	1976. 1. 1. ~ 1997. 12. 31.

※ **응시 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

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1) 공통사항(공개·경력경쟁채용) : 제1종 운전면허(대형 또는 보통) 소지자
(도로교통법 제80조)

※ 운전면허 적용 기준일 : 응시원서접수일 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2) 경력경쟁채용시험 분야별 자격 및 경력요건

채용구분	계급	분야	자격(면허) 및 경력요건
경력경쟁채용	지방소방사	구조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부사관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 (국방부)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③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

채용구분	계급	분야	자격(면허) 및 경력요건
경력경쟁채용시험	지방소방사	구급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 경력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2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⑧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전산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전산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응용 - 기사 :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 응용 - 산업기사 : 정보처리, 정보보안 ※ 전산관련 실무경력 인정범위 ▶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스토리지) 구축.설계.운영 ▶ S/W개발, DB설계 및 운영부서에서 S/W 개발.연구.운영, D/B 개발.연구.운영 ▶ 정보보안 기획.관제.운영.분석 및 침해사고 대응
		운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운전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군경력 제외) ※ 운전 실무경력 인정범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 참조) ▶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긴급자동차(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외) ▶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 특수자동차(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운전경력 증명 : 대표자가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로 인정 → [붙임 2]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 자격(면허)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임.
-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 ▶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히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 발급)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경력 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마.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 동 신 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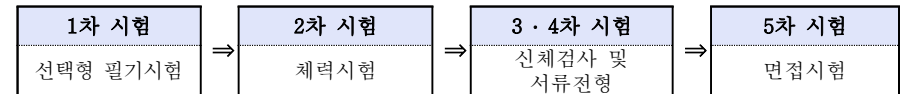
채용방법	접수 및 취소기간	시 험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일
공개경쟁 채용시험 · 경력경쟁 채용시험	9. 4.(월) ~ 9. 8.(금) 09:00~21:00 ※취소기간 : 9.4.~9.15.	필기시험	2017. 10.13.(금)	2017.10.28.(토) 10:00	2017. 11.17.(금)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2017. 11.17.(금)	2017.11.22.(수) ~ 11.29.(수) 기간중 1일	2017. 12.4.(월)
		서류전형	2017. 11.17.(금)	2017.12.12.(화) 개별 방문제출	불합격자 개별통보
		신체검사	2017. 12.4.(월)	2017. 12.11.(월)~12.13.(수)	2017. 12.18.(월)
		인·적성검사	2017. 12.4.(월)	2017.12.22.(금)	면접위원 참고자료
		면접시험	2017. 12.18.(월)	2017.12.27.(수)	2018. 1.10.(수)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및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

4

시험절차 및 시험방법

가. 시험절차



※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필기시험 성적결과는 불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 합격자발표일로부터 2주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나.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시험(5과목) : 10:00~11:40(100분)
 - 경력경쟁채용시험(3과목) : 10:00~11:00(60분)
- 배점 및 문제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 택1형 20문항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 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합격자 결정▶

-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전산분야는 3배수)**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2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 선택과목의 득점 산출방법(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2, 별표 7의 계산식 적용)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적용하여 조정점수로 산출하며,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공개하지 않음 → **[붙임 3]**

2)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및 도핑테스트

- 체력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을 실시합니다. → **[붙임 4, 5]**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며 실시합니다.
 - ▶ 체력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검사절차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 **[붙임 6]**
 -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 7]**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합니다.
 - ▶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와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도핑테스트 판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합격자 결정▶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참조

3) 제3-4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적성검사 포함)

-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기간내에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응시자 부담
 -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합니다. → **[붙임 8]**
 - ▶ **신체검사 일정 및 장소(지정병원)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려드립니다.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경력,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5에 따라 합격자에 대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인·적성검사 일시·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려드립니다.

4)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인·적성검사, 신원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증합니다.
 - ※ 면접평정요소 및 합격자 결정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에 따름

◀합격자 결정▶

-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
-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다. 최종합격자 결정(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4항)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5항)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된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1522-0660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내에 취소한 경우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 (별도 처리비용 제외)

- 응시원서 접수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응시원서 접수시 사전 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관계기관에 자격여부 확인 및 환불예정)

라. 사진 등록

- 응시원서 접수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cm×4.5cm(해상도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 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이 가능하며,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기간 내 접수 취소 시에는 규정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지역제한·응시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가점과 자격증(면허증) 가점은 각각 합산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가점은 하나만 인정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등 가산점은 분야별로 유리한 것 1개(서로 다른 2개 분야는 합산), 최대 5%까지 인정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등 소지자	자격증(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5%	
	사무관리	과목별 만점의 1%~3%	

나.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단계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비율에 대하여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의사상자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 2에 의거 의사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3% 또는 5%)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 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본인의 의사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사회복지담당부서)등에 직접 확인바랍니다.

라.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만 해당)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일정비율 (1~5%)을 가산합니다.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정하되, 각 분야 별로 유리한 것 하나만 가정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 → [붙임 9]

비율 분야	5%	3%	1%
자격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 기관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 ·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 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대형견인차 4.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
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함.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기상

마. 가산특전에 있어서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의 경우 가산특전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가점이 모두 해당될 때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10. 28. ~ 11. 1.)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
(보훈번호, 증서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
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에 공고합니다.
-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중복지원, 가산특전 대상자 가산점 등록
기간내 미 입력 및 오류입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다.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 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소지하고 시험
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마.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
성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
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됩니다.
- 바.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
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 답안은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응시자는 시험당
일 이를 지참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
로 잘못표기(이중, 번짐 등)한 경우에는 OMR 기기의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 아. 모든 필기시험 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 종료 후 전량 회수합니다.
- 자.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 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차.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062-613-8021 / 80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안내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2. 운전분야 운전경력 증명서
3. 선택과목 특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5.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6. 동의서
7.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7-1.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7-2.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8.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9. 소방공무원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세부내역

본 공고문의 내용은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를 통해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접속방법 :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시험정보 → 지방공무원】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특성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치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text{응시자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div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비고

-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기]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4 참조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정방법 등
악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근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정방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더(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중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출발'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출발'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I. 금지약물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methenolone ▶stanozolol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hexanamine(dimethylpentylamine) ▶methylephedrine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morphine
- ▶oxycodone ▶oxymorphone ▶pentazocine ▶pethidine

II. 금지방법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조건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물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input type="checkbox"/> 응급 <input type="checkbox"/> 기간(주/월) _____
--------------------------------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 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의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붙임 8]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합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야병·트리빠노조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랫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 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계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분	내용
7. 생식비뇨기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분	내용
12. 귀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소방공무원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세부내역

비율 분야	5%	3%	1%
① 자격증 (면허증)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기능장	소방관련 국가기술 자격 중 기사	소방관련 국가기술 자격 중 산업기 사 기능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 시공, 건설기계, 공조냉동 기계, 산업기계설비, 건설 기계정비, 철도차량, 철도 차량정비, 조선, 항공기 관, 항공기체, 차량, 자동 차정비, 화공, 위험물, 건 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 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 호,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정보 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통신설비, 가 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 공학, 전기안전, 화공안 전, 비파괴검사, 기상예 보,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 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 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 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 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 닌스, 철도차량, 조선, 향 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 자동차, 화공, 화학류제 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 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 체설계, 의공, 전자계산 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 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 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 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 리, 소방설비(기계, 전기),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외전류비파 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기상, 기상감 정,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 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 축, 거푸집,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운수 운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 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 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 전, 천공기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 인운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정비, 공조냉동기계, 반도체장비유지보수, 기계 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생산자동화, 농업기 계, 설비보전, 농기계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정 비, 조선,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 제도, 항공,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 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보수 도장, 자동차차체수리, 화학류제조, 화학분석, 위 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전 기신호,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제어, 전자,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 기, 전자카드,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기운 용,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통신기기, 가스, 건설안전, 산 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전기), 화 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1급~4급 향해사 기관사	5급 또는 6급 향해사 기관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의사, 변호사 소방시설관리사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소방안전교육사	제1종 특수트레이더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응급구조사 2급
②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①+② 합산, 단, 5%초과시 5%만 가점)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함(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